

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안내

본교의 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.

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,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운영을 안내드립니다.

-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(15일 이내) 로 하며,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(5일 이내) 로 한다.
- 관찰, 조사, 수집, 현장 견학, 답사,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(15일 이내) 로 사용가능하며, 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경계’ 단계 시 교외 체험학습 승인사유에 ‘가정학습’ 을 포함하여 연 (15일 이내) 로 사용할 수 있다.
-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, 필요시 반일(4시간)도 사용할 수 있다. (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)
- 교외체험학습은 학생·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(감염병 위기경보 ‘심각,경계’ 단계의 경우 전일)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,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. 단,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인정 가능하다.
 - ① 지역 내 갑작스러운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당일 신청이 불가피한 경우
 - ② 그 외 학교장이 불가피하다 인정하는 경우
- 체험학습 불허 사항
 -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
 -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및 성적확인 기간
 - ③ 학기 및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및 종료 전 3일 기간
 -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
 - ⑤ 그 외 학교장 판단하에 불허한 사항

2023. 3. 22.

전 주 동 중 학 교 장(직인생략)